

※ 본 서식은 불특정 다수의 영업비밀 보유자(기업 또는 개인)가 활용함을 상정하여 작성된 표준서식으로서
사용자의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수정 또는 변경하여 활용하여야 함.

※ 본 서식은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없음.

기술(노하우)이전계약

주식회사 ABC(이하, 'ABC' 이라 함)와(과) 주식회사 XYZ(이하, 'XYZ'라 함)는(은) ABC 가
보유하고 있는 노하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다.

다음

제 1 조 (목적)

본 계약은 ABC 가 보유하고 있는 [노하우 기술의 명칭]을 XYZ 에게 이전함에 있어서
당사자 간의 권리·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다.

제 2 조 (정의)

- 본 계약에 따라 ABC 가 XYZ 에게 이전하기로 한 기술은 별지 이전기술(노하우)에
기재한 노하우(이하 '계약기술' 이라 함)를 말한다.
- '계약제품' 이라 함은 계약기술을 사용하여 생산되는 모든 제품(또는 장치, 설비 등)을
말하며, 반제품 또는 원료를 생산, 판매하는 경우 그 반제품이나 원료를 포함한다.
- '매출액' 이란 계약제품의 매출로 발생한 매출액을 말한다.

제 3 조 (계약 기간)

-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[]년 []월 []일까지로 하며, 쌍방
서면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.
- 당사자 일방이 계약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계약만료일로부터 1 개월 전에 계약
연장 의사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, 그 통보가 없는 때에는 계약기간
만료로 본 계약이 확정적으로 종료한다.

제 4 조 (실시권)

※ 본 서식은 불특정 다수의 영업비밀 보유자(기업 또는 개인)가 활용함을 상정하여 작성된 표준서식으로서 사용자의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수정 또는 변경하여 활용하여야 함.

※ 본 서식은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없음.

- ① ABC 는 본 계약의 조건에 따라 XYZ 가 대한민국 내에서 계약기술을 실시하는 것에 동의하며, XYZ 에게 계약기술에 관한 비독점적인 실시권을 허락한다.
- ② 제 1 항의 실시권은 계약기술을 이용하여 계약제품을 생산, 판매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.
- ③ XYZ 는(은) 제 3 자에게 제 1 항의 실시권을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거나 재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다.
- ④ XYZ 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[]년 동안 계약기술의 일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경우, 그에 대하여는 실시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.

제 5 조 (실시대가)

- ① XYZ 는(은)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[]월 이내에 ABC 에게 제 4 조의 실시권 허락에 대한 대가로 선급기술료 금 []원(부가가치세 별도)을 지급하되, 그 지급방법은 ABC 의 은행 계좌([]은행, 계좌번호 [])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.
- ② XYZ 는(은) 제 1 항의 선급 기술료와 별도로 매년 4 월 30 일까지 ABC 에게 경상기술료로 전년도 매출액의 []%(부가가치세 별도)를 지급하여야 한다.
- ③ XYZ 는(은) 매회계년도 개시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전회계년도에 대한 경상기술료 계산서와 계약제품의 판매가격, 수량, 유형 등이 기술된 서면보고서(이하 경상기술료 계산서와 함께 ‘경상기술료 증빙서류’ 라 함)를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아 ABC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④ ABC 는(은) XYZ 가 제 3 항에 따라 제출한 경상기술료 증빙서류를 확인하기 위하여 ABC 가 위촉한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계약제품의 판매수량, 매출액 등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.
- ⑤ ABC 가 위촉한 공인회계사는 판매수입 등의 결정을 위하여 통상 근무시간 중에 XYZ 의 필요한 장부를 열람할 수 있으며, XYZ 는(은) 당해 공인회계사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.
- ⑥ XYZ 는(은) 제 4 항에 따라 ABC 에 의하여 위촉된 공인회계사의 조사결과 제 3 항에 따라 제출된 기술료 증빙서류가 허위이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당해 공인회계사의

※ 본 서식은 불특정 다수의 영업비밀 보유자(기업 또는 개인)가 활용함을 상정하여 작성된 표준서식으로서
사용자의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수정 또는 변경하여 활용하여야 함.

※ 본 서식은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없음.

조사결과에 따른 기술료 차액을 추가로 ABC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
- ⑦ XYZ 는(은) 제 6 항에 따라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기술료 차액이 제 3 항에 따라 ABC 에게 보고한 기술료의 5%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일 경우, ABC 가 제 4 항에 따라 위촉한 공인회계사의 경상기술료 조사비용을 전부 부담하여야 한다.
- ⑧ XYZ 가 경상기술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지급하지 못할 경우, 그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연 5%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ABC 에게 지급하여야 한다.
- ⑨ 본 계약에 따라 XYZ 가 ABC 에게 지급한 모든 기술료는 여하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.

제 6 조 (계약기술의 개량)

- ① XYZ 또는 XYZ 의 임원 및 피용자가 계약기술의 개량, 확장, 대체, 추가 등의 방법으로 개발한 기술(이하 ‘개량기술’ 이라 함)에 관한 새로운 특허,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취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ABC 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- ② 제 1 항에서 XYZ 의 임원 및 피용자가 개량기술을 개발한 경우에 XYZ 는(은) 개량기술에 관한 특허 등을 받을 권리를 그 임원이나 피용자로부터 승계 받아야 한다.
- ③ 개량기술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ABC 와 XYZ 의 공유로 한다.
- ④ 개량기술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출원, 등록, 유지 등의 비용은 ABC 와 XYZ 의 공동부담으로 한다.
- ⑤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개량기술의 실시는 본 계약에 따른 계약기술의 실시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.

제 7 조 (면책)

ABC 는(은) XYZ 가 실시하는 계약기술이 제 3 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거나 사업화,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며, 계약기술의 실시에 의하여 XYZ 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실(제 3 자에 대한 실시로 지불을 포함)에 대해서도 책임지지 아니한다.

제 8 조 (비밀 보장)

※ 본 서식은 불특정 다수의 영업비밀 보유자(기업 또는 개인)가 활용함을 상정하여 작성된 표준서식으로서
사용자의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수정 또는 변경하여 활용하여야 함.

※ 본 서식은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없음.

- ① XYZ 는(은) 본 계약에 따라 ABC 로부터 제공받은 계약기술 및 관련 자료, 노하우, 기타 정보 등이 제 3 자에게 공개, 제공, 누설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하여야 하며, XYZ 의 임원 및 피용자나 그 승계인이 이와 같은 비밀유지의무를 준수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- ② 제 1 항은 본 계약이 계약기간 만료, 해제, 해지 등으로 종료된 후에도 3 년간 계속 유효하다.

제 9 조 (계약의 해지)

- ① ABC 는(은) 다음 각 호의 경우 30 일 이상의 상당한 기한을 정하여 XYZ 에게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하고, 그러함에도 XYZ 가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가.호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.
 - 가. XYZ 가 부도, 파산, 폐업 등으로 조업을 중단한 경우
 - 나. XYZ 가 본 계약에서 정한 기술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
 - 다. XYZ 가 제 5 조에서 정하는 경상기술료 증빙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고의로 경상기술료를 축소하여 지급하는 경우
 - 라. ABC 가 경상기술료 증빙서류를 요청한 후 XYZ 가 1 개월 이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
 - 마. XYZ 가 제 5 조에서 정하는 경상기술료 실태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
- ② 제 1 항에서 XYZ 의 임원 및 피용자가 개량기술을 개발한 경우에 XYZ 는(은) 개량기술에 관한 특허 등을 받을 권리를 그 임원이나 피용자로부터 승계 받아야 한다.
- ③ 개량기술에 관한 지식재산권은 ABC 와 XYZ 의 공유로 한다.
- ④ 개량기술에 관한 지식재산권의 출원, 등록, 유지 등의 비용은 ABC 와 XYZ 의 공동부담으로 한다.
- ⑤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개량기술의 실시는 본 계약에 따른 계약기술의 실시에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.

제 10 조 (계약의 변경)

본 계약에서 별도의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조항의 변경, 추가 또는 삭제는

※ 본 서식은 불특정 다수의 영업비밀 보유자(기업 또는 개인)가 활용함을 상정하여 작성된 표준서식으로서
사용자의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수정 또는 변경하여 활용하여야 함.

※ 본 서식은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없음.

양 당사자 또는 그 대표자가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에 의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.

제 11 조 (통지)

본 계약의 당사자는 본 계약 체결 후 주소, 대표자, 담당자 등 중요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(전자문서 포함)으로 통지하여야 하며, 그 불이행으로 인한 상대방의 착오는 중요 사항이 변경된 자의 항변으로부터 면책된다.

제 12 조 (명칭 등의 사용금지)

XYZ 는(은) 본 계약과 관련하여 ABC 의 사전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ABC 로부터 지득한 정보 및 ABC 가 제공한 문서 및 자료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그 원본이나 복제, 복사물을 광고, 판매촉진, 기타 선전의 목적 혹은 쟁송상의 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 13 조 (분쟁해결)

- ① 본 계약에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의 상호협의를 의한 해결을 모색하되, 분쟁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명진흥법에 의하여 설치된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.
- ②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쟁이 해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[서울중앙지방법원]을 제 1 심 관할법원으로 하여 소송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기로 한다.

제 14 조 (계약의 효력)

본 계약서는 본 계약의 목적에 관한 양 당사자의 모든 합의 및 양해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, 본 계약서로 인해 본 계약 체결 전의 양 당사자 간의 일체의 논의, 문서, 각서, 통신, 계약, 양해 사항들은 실효되며, 그 실효된 것에 구속되지 아니한다.

ABC 와(과) XYZ 는(은) 본 계약의 체결사실 및 계약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 2 부를 작성하여 각각 서명(또는 기명날인)한 후 각자 1 부씩 보관한다.

※ 본 서식은 불특정 다수의 영업비밀 보유자(기업 또는 개인)가 활용함을 상정하여 작성된 표준서식으로서
사용자의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수정 또는 변경하여 활용하여야 함.

※ 본 서식은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없음.

별첨 : 이전기술(노하우) 1 부

20____년 ____월 ____일

"ABC"

(명칭) 주식회사 ABC

(주소)_____

대표이사_____ **(인)**

"XYZ"

(명칭)주식회사 XYZ

(주소)_____

대표이사_____ **(인)**

※ 본 서식은 불특정 다수의 영업비밀 보유자(기업 또는 개인)가 활용함을 상정하여 작성된 표준서식으로서
사용자의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수정 또는 변경하여 활용하여야 함.

※ 본 서식은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없음.

이전기술(노하우)

■ 노하우의 명칭

■ 노하우의 내용

■ 관련 자료

■ 노하우 이전 일정

※ 본 서식은 불특정 다수의 영업비밀 보유자(기업 또는 개인)가 활용함을 상정하여 작성된 표준서식으로서
사용자의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수정 또는 변경하여 활용하여야 함.

※ 본 서식은 어떠한 법적 구속력도 없음.

■ 특기 사항